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3.

발 의 자 : 김동아 · 이건태 · 박균택
임미애 · 정준호 · 문대림
염태영 · 최기상 · 양부남
최혁진 · 윤준병 · 김남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.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,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.

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이 예산

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,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(안 제8조제5항 등).

법률 제 호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 ⑤ (생략)	제8조(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.</u>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